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2회 정례회
2020. 6. 9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0년 5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「아동복지법시행령」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위원회의 규정방식 및 용어, 문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13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함. (안 제3조)

-「양성평등 기본법」제21조에 따른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

- 부위원장 : (현행) 아동복지담당국장 → (개정) 호선

○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. (안 제5조)

○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규정함. (안 제9조)

- 간사 :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/ 서기 :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른 그 내용을 반영하고, 위원회 규정방식 및 자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❍ 안 제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, **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라**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**성별을 고려하여 구성**하고, **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**하도록 규정한 것임.

「아동복지법시행령」

제13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❍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**「아동복지법시행령」 제13조제3항에 따라**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음.

「아동복지법시행령」

제13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○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각각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,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규정한 것으로, **위원회 업무 담당을 명확히** 하고 **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**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·문구 등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절차상으로도 조례안 예고 등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문제 없음.